

SAMC | LAW REVISION

1. 면세점 구매한도, 9월 1일부터 '3,000달러 → 5,000달러' 늘어

해외로 출국하기 전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미화 3,000달러에서 미화 5,000달러로 늘었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8월 30일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의 과도한 소비 등을 제한하기 위해 내국인은 일정 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1979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점차 한도 금액을 올려왔다.

[Read More](#)

2. 中·인니·태국産 OPP 필름에 5년간 최대 25% 덤핑방지관세 부과

우리 정부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사용하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에 5년간 최대 25.0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産 OPP 필름엔 2.15~25.04%, 인도네시아産엔 3.19~5.98%, 태국産엔 2.60~10.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8월 23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ad More](#)

3.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기획재정부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적용요건인 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조세법처벌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적용요건에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적용대상을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다. 더하여 신청기한도 개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말까지)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맞대응 카드' 꺼낸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우리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일본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통제 수준은 지난 행정예고 당시와 동일하게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옮겨 비우대국과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9월 18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ad More](#)

2. 한·태국 AEO MRA,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9월 1일부터 한·태국 AEO MRA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AEO 수출기업은 태국에서 수입화물 검사 및 서류 심사비용 축소, 화물검사 시 우선검사,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시 우선조치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은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EO MRA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은 현지에서 빠른 수입절차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Read More](#)

3. 중국, WTO에 미국 제소...15% 추가 관세폭탄에 맞불

중국 상무부가 2일 밤 미국이 1100억 달러 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15% 추가관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 부과가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 체계와 국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9월 1일부터 'HS 2017' 적용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HS 2012'에서 'HS 2017'로 변경돼 그동안 對ASEAN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HS 코드를 2번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8월 30일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는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HS 2012'에서 'HS 2017'로 전환하기로 했다.

[Read More](#)

2. 한·영 FTA 정식 서명 한·영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에도 한·영 양국은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런던에서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Read More](#)

3. "트럼프-존슨, 내년 7월까지 美-英 FTA 타결 추진 합의"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가 내년 7월까지 속전속결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더 선지가 22일 전했다. 신문은 존슨 총리가 9개월 만에 합의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나 내년 11월 미국 대선과 하원 의원 선거로 미국 의회가 분주해지고, 새 대통령이 FTA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양국 FTA가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큰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분말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공정 후 자석을 이용하여 쇳가루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 가공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쇳가루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분말·가루·환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분말·가루·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하여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있다.

[Read More](#)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국가 변경 및 재지정 알림

검사명령 대상 수입품 중 검사명령기간이 종료 되는 품목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 추가 한다고 알렸다. 대상 국가는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이며 대상 식품은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세슘, 요오드)이며 검사명령기간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이다.

[Read More](#)

3.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 예고.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행정 예고하였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8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 신설하였다. 예시로 등급이 1++이면 1++(7), 1++(8), 1++(9), 1,2,3등으로 표기하면 되고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8(17~19%),9(19%이상)오 같이 표기하면 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2. 터목에 근거하여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수입식품등의 원료, 제조공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Read More](#)

2. 중국산 조개젓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 신고수리보류 조치를 하였다. 유통중인 중국산 조개젓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였다. 대상 국가는 중국이며 대상 제품으로는 DONGGANG HUIYUAN FOOD CO., LTD사에서 조개(바지락)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젓갈 및 양념젓갈이며 해저 시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Read More](#)

3.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등록 통지(18.5~6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이다.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